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각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예금 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